

공사계획의 신고대상(제11조제2항 및 제62조의2제2항 관련)

1. 제조소

가.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위치 변경공사

- 1)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
- 2) 가스홀더
- 3) 배송기 또는 압송기
- 4) 저장탱크
- 5) 가스압축기
- 6) 냉동설비(기름분리기·응축기 및 수액기만을 말한다)

나.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안전장치의 변경공사

- 1)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
- 2) 가스홀더
- 3) 저장탱크
- 4) 열교환기

2. 공급소

가.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위치 변경공사

- 1) 가스홀더
- 2) 압송기
- 3) 삭제 <2011.11.4>

나.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

- 1) 가스홀더 및 정압기의 안전장치의 변경공사
- 2) 정압기의 용량 변경공사

3. 사업소 외의 가스공급시설

가. 배관

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 공급관 중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공급관을 20m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.

- 1) 호칭지름이 50mm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
- 2) 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공사로서 해당 공사구간 안에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

나. 정압기지(정압기)

- 1) 삭제 <2014.10.7.>
- 2) 방산탑(벤트스택)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
- 3) 배관공사(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을 20m 이상 설치·증설·교체 또는 이설하는 공사만을 말한다)
- 4) 삭제 <2009.9.25>